

강의평가 운영 규정

제 정 : 2013. 02. 20.

최근개정 : 2023. 12.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42조의3과 교원업적평가규정 제4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교원의 강의평가 시행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교원인사 및 평가의 근거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강의평가는 당해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개설된 전 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매 학기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강의평가 부적합 과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조(평가시기 및 방법)

- ① 강의평가는 매 학기 9주 차 중간평가 및 학기 말 최종평가 시행을 공지 후, 본교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간에 실시한다.<개정 2020.12.23.>
- ② 강의평가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은 성적 열람을 할 수 없도록 한다.
- ③ 강의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강의평가 문항을 사전에 공지하며, 강의평가 참여 학생의 익명성을 반드시 보장한다.
- ④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과목은 평가자의 비밀을 보장하여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유형 및 항목)

- ① 강의평가 유형 및 항목은 별표 1과 같이 선다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23.>
- ② 강의유형은 일반강의형, 강의 및 실험·실습형, 예·체능 실기형, 사이버강의형으로 분류한다.

제5조(평가점수 산정)

- ① 평가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통계 표준식을 이용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과목별 강의평가 점수는 수강학생 평가점수들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수강과목의 성적평가 등급이 'F'인 학생의 강의평가 점수
 2. 아래 기준의 '불성실 의심응답'으로 판정된 강의평가 점수
 - 가. 강의평가 평균점수 3.5 이상 과목은 강의평가 참여 학생이 하위 1과 2척도에 90% 이상 동일하게 응답한 자료
 - 나. 강의평가 평균점수 3.0~3.5 미만 과목은 강의평가 참여 학생이 하위 1척도에 90% 이상 동일하게 응답한 자료
 - 다. 강의평가 평균점수 3.0 미만 과목은 불성실 의심응답 자료가 없는 것으로 한다.
- ③ 과목별 강의평가 점수 산정 시 해당 과목의 이수구분과 수강인원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문항별 차등 가중치를 적용하되, 문항별 만점은 5점으로 한다.
 1. 이수구분과 수강인원에 따른 가중치 적용문항은 별표 1과 같다.
 2. 이수구분과 수강인원 가중치 적용 문항의 강의평가 점수 변환 공식은 별표 2와 같다.
- ④ 교수별 강의평가 점수는 담당 과목별 강의평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제6조(평가결과 확인)

- ① 학생들의 개별강의평가는 총장의 허가를 얻지 않는 한 공개될 수 없으며, 강의평가결과가 학생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성적정정 기간이 완료된 이후 담당교수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강의평가결과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수에게 담당 과목별 강의평가 점수와 문항별 응답분포를 제시하고, 수강인원에 따라 그룹(소형, 표준형, 중대형 과목)별로 산출된 학과별, 이수 구분별, 직위별(전임과 비전임) 순위와 백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수강인원 5명 이하의 과목은 강의평가 점수만 확인할 수 있으며, 문항별 응답분포는 제시하지 않는다.

제7조(평가결과 활용 및 공개)

- ① 강의평가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업적평가, 교원 재임용 및 승진, 강사 위촉 시에 반영하되,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강의평가 부적합 과목의 결과는 반영하지 않는다.
- ② 강의평가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과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2015.02.27.개정]
 1. 공개범위 : 교수별 담당 강좌의 강의평가 평점 평균점수

- 2. 공개기간 : 다음 학기 수강 신청 기간 중
 - 3. 공개대상 : 해당 학기 개설강좌 전체
 - 4. 열람대상 : 수강 신청대상자 전체
- ③ 강의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 및 강사에게는 본교에서 정한 별도의 품의에 의거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④ 학기별 최종 강의평가 결과 하위 10%중 평균평점 3.7미만인 교원은 대학혁신본부에서 제공하는 교수법 컨설팅에 참여해야 한다.[2018.01.17.개정, 2020.12.23., 2023.12.13.]

제8조(평가결과 보고 및 비밀 유지)

- ① 학사지원과는 매 학기 실시한 강의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② 본교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강의평가결과 외 개별 교원의 강의평가결과와 평가 관련 자료는 임의로 공개하지 않으며, 해당 교원 및 업무관련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 ③ 단과대학장(대학원장) 및 학과장은 소속 강사의 강의평가 결과를 학사지원과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0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00107호,2020.12.23.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학혁신본부 운영 규정」(규정 제23273호,2023.12.13.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규정의 폐지)

생략

제5조(다른 규정의 개정)

- ① ~ ③ 생략
- ④ 「강의평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대학교육개발원"을 "대학혁신본부"로 한다.
- ⑤ ~ ⑫ 생략

제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생략